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3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8.

발 의 자 : 이강일 · 강준현 · 김남근
김남희 · 김문수 · 김우영
김주영 · 김현정 · 민병덕
박상혁 · 박정현 · 백혜련
송재봉 · 이용우 · 허성무
허영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의 악화로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교적 실패확률이 낮은 가맹계약 형태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창업희망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가맹사업”, “가맹본부”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또한 가맹점 형태의 창업은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에 해당하지만,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등 법상 여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물품공급계약이나 용역도급 계약 등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가맹사업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정절차에서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가맹본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조정을 거부함으로써 협의회의 조정절차는 종료됨.

이처럼 협의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장·입증하기는 용이하지 않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의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신속한 사실과 증거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의 신속한 변론을 위하여 직권으로 협의체에서 실시한 조사 및 조정기록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23조의2제4항 신설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가맹사업,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협의회가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피해가 크고 사실과 증거에 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협의회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의 신속한 변론을 위하여 직권으로 협의회에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 기록 및 제23조제8항에 따른 조정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

법」 제294조를 준용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2”를 “제1호의2,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사업 또는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u> <u>이 법에 따른 가맹사업, 가맹본</u> <u>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u> <u>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u> <u>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외국어 문자를 포함한다)</u> <u>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제23조(조정 등) ① ~ ③ (생략)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23조(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다</u> <u>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협</u> <u>의회가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u> <u>피해가 크고 사실과 증거에 관</u> <u>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u> <u>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u> <u>아니하다.</u>
1. ~ 3. (생략) ⑤ ~ ⑦ (생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u>협의회는 제4항 단서에 따</u> <u>른 조사의 결과 조정이 필요하</u> <u>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조</u>

